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78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이광희 · 박홍근 · 박지원
전현희 · 조계원 · 박해철
복기왕 · 허 영 · 김 윤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 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둘 수 있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둘 수 있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u> <u>1. 읍·면·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u> <u>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u>

우 국가는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